이 자료는 지난 8월 1일 환경부에 제출한 건의 내용을 요약 · 정리한 것임
- 편집자 주 -

배출부과금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의견

대 한 석 유 협 회

배출부과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폐협회의 건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변 경 (안)	검 토 의 견	사 유
1. 부과항목 o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o 질소산화물 삭제	o 대도시에는 공장보다는 자동차로 인한 NOx가 주원인이므로 배출부과금을 자동차에 부과하여야 하며, 공장등 배출시설에 대한 NOx부과금은 원칙적으로 삭제함이 바람직함
2. 부과금액 o 질소산화물을 대상항목에 추가	o 부과금액 하향조정	o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질소산화물 부과금액(1,060원/kg)은 너무 과중하므로 황산화물 부과금액(350원/kg) 수준으로 하향조정이 필요함
3. 기본부과금 면제기준 o 면제기준 없음 -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부과	o 부과금 면제 및 감면조항 부활 - 배출허용기준의 30%적용 - 0.5%중유사용시 면제 - 청정공정가스 사용시 면제조항 신설	o 업체에서는 면제기준인 배출허용기준 30%이내를 준수하기 위하여 시설변경 및 연료변경등 막대한 투자를 통하여 면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변 경 (안)	검 토 의 견	사 유
	- 연료의 농도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 현행유지 (공단지역일 경우 부과금 감면 조항 필요)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 기준 설정시 환경정책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기존의 저황유를 사용하던 업체에도 부과금 면제 기준을 폐지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연료규제와 부과금 납부라는 이중규제가 되므로 기존의 연료에 의한 황산화물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ㅇ 공정가스는 중유에 비해 환경성이 월등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부과금 면제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0.1%이하의 청정공정가스 상용시 면제 조항 신설 필요
4. 배출허용기준적용 여부 ㅇ 배출허용기준 적용	ㅇ 현행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삭제	ㅇ 먼지, 황산화물, NOx의 부과금제도가 환경부안대로 실시될 경우 각 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중규제임)
5. 오염물질 측정주체 ㅇ 공인기관의 측정결과 이용	ㅇ 현행유지 - 사업장에서 관제센터의 TMS 자료 및 자가측정 자료 활용	ㅇ TMS가 설치되지 않은 굴뚝이 많으며 공인기관의 측정시 잦은 사업장 출입으로 환경담당자의 업무 및 비용부담이 가중됨
6. 부과대상시설 ㅇ 전 대상시설에 부과	ㅇ 현행유지 -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은 제외	ㅇ 방지시설 설치 면제는 환경부에서 방지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별도의 부과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7. 부과대상 ㅇ 1~3종 사업장	ㅇ 현행유지 - 1~5종 전 사업장	ㅇ 4~5종 사업장을 제외시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8. 시행시기 ㅇ 2003년 시행	ㅇ 2010년 시행	ㅇ 각 사업장에서 투자에 필요한 기간 및 예산을 확보해야하므로 상당기간 유예시간이 필요함